

#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과 알코올정책의 활성화

김 광 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 건강한 음주문화조성과 알코올정책의 활성화\*

김 광 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 I. 서론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피해의 크기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음주 또는 과음은 보건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보건문제임과 동시에 사회문제(김광기, 1999)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을 별로 불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음주문제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시각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생의학적 패러다임(biomedical paradigm)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수준에서의 통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통제에 불과하였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은 이러한 흐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음주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작동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음주제한 연령의 시행, 음주운전 단속, 주류용기에 경고문구 부착, 주류광고 규제 및 모니터링 등이 입법적인 근거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외에 교육 홍보 활동 및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노력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음·폭음을 조장하는 음주문화의 지속, 여성음주자 및 청소년음주자 비율의 증가, 술에 취해 있는 대학문화와 그 결과로 인한 지속적인 대학생 음주사망사고 발생, 음주운전사망 비율의 증가 등과 같은 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음주소비와 음주폐해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음주소비와 음주폐해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주사업으로 대변되는 알코올관련 건강증진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

---

\* 본고는 2004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 연구사업으로 수행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절주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부임

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절주사업에 직접 관련된 것과 음주문화 및 음주폐해를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인식체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절주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절주사업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명확하지 않은 정책의 목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된 자원 부족, 사업추진체계의 부재 등과 같은 정책적인 요인과 관련된다. 음주폐해는 개인적인 병리문제로서 사회나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설령 개입한다고 해도 치료와 재활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절주사업 부진의 또 다른 이유이다. 이는 보건문제 인식의 기본 틀인 생의학적 관점(paradigm)에 음주의 긍정적 기능을 확대하려는 문화적 전통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 결과 음주폐해는 축소되어 인식될 수밖에 없고 하나의 사회문제로 평가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만큼의 자원분배도 받지 못하는 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절주사업 또는 알코올 정책이 위와 같은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지 않는 한 음주폐해는 국가의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로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알코올 통제정책을 새롭게 조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알코올통제에 관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사회와 개인이 경험하는 음주폐해는 일부의 일탈적인 음주자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개선의 여지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사회문제가 아닌 개선이 가능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Edwards et al. 1997). 국민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서 알코올정책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잘된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되는 것과 같은 지극히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파급효과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Babor et al. 2003). 예컨대, 음주허용연령을 상향조정된 미국에서는 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7,359명(1975년부터 1997년까지) 예방할 수 있었다는 보고(NHTSA 1998)를 통해서도 알코올 정책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소비자 주권시대의 시대적 조류와도 관련된다.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혜택과 고통(pain)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음주자 자신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려면 이에 필요한 정보가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음주의 긍정적 가치만을 확대 재생산하는 주류광고와 마케팅으로 인해 과음을 즐겨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로 인해 음주로 기인한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 그 책임을 주류광고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정책 부재에 두기보다는 개인의 무절제 탓으로만 돌린다면 이는 질병이환자를 “두 번 죽이는 꼴(blaming the victim)”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고에서는 건강증진정책으로서 현재의 절주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음주폐해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국내 알코올정책 실태

#### 1) 정책 대상의 문화적 측면: 음주의 일상성

건강에 해롭도록 음주하는 사람들이 모든 집단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볼 때, 과음과 폭음이 우리 사회에서 폭넓게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인, 대학생, 직장인 및 청소년 등 모든 집단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음주행동으로 정형화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수의 일부 사람들의 음주행동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된 문화적 이유는 집합주의적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에 음주가 의사소통을 위한 의례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취한 상태의 교류가 오히려 조장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과음이나 폭음을 병리적인 행동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과음이나 폭음을 내부인의 시각(emic)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대안의 마련도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과음을 건전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윤리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과음의 사회적 문화적 차원을 경시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이고 문화적 차원을 고려한 환경변화에 의한 정책대안의 마련보다는 개인에게 집중하는 정책대안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과음이 하나의 사회적 행동으로서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과음의 폐해를 홍보하는













































